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 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21-09-06

## 서울남부지방법원

### 판 결

사 건 2021고정33 저작권법위반  
피 고 인 A  
검 사 임연진(기소), 조아영(공판)  
변 호 인 법무법인 린  
담당변호사 안규리  
판 결 선 고 2021. 7. 22.

### 주 문

피고인을 벌금 3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### 이 유

#### 범 죄 사 실

누구든지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.



그럼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은 2020. 4. 25.경부터 6. 4.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B에, 고소인이 C일자 한국저작권 협회에 D로 등록한 편집저작물 'E 이미지'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.

## 증거의 요지

### 1. 증인 F의 법정진술

#### 1. F의 진술서

#### 1. 주식회사 G의 고소장

#### 1. 고소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저작권등록증 및 원저작물, 피고소인의 사용화면

## 법령의 적용

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(벌금형 선택)

### 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### 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[피고인 및 변호인은 저작권 등록과정에서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미지가 저작권으로 등록된 편집저작물이라는 이유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, 이 사건 이미지는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,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·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



것인바,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, 구도의 설정,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, 카메라 각도의 설정, 셔터의 속도, 셔터찬스의 포착, 기타 촬영방법,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(대법원 2006. 12. 8.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참조),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들 즉, 이 사건 이미지는 2020. 4. 27. '저작물의 제호: E, 저작물의 종류: 편집저작물, 저작자 성명: 주식회사 G, 창작연월일: 2019. 10. 27., 공표연월일: 2019. 10. 28.'로 하여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을 뿐 아니라(D), 촬영자가 사진의 구도, 배경의 설정, 빛의 양, 카메라 각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, 사진에 있는 문구 역시 글씨 크기, 모양, 사진 내 배치 위치 등을 고려하면,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]

#### 양형의 이유

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, 범행 전후의 정황, 피고인의 범죄전력,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,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,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.

판사            박예지 \_\_\_\_\_